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보보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상용화,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정보보호산업의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련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정보보호기술 개발, 정보보호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정보보호기업의 육성 및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산업의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연구개발
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
4.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5.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
6. 지역기업의 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예방·관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정보보호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연구기관의 유치) ①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그 밖에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된 공공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세종특별자치시 내 설치 및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간 제공, 시설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보호 지원센터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에서 운영되는 정보보호 관련 지원센터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관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

나.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하 “정보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및 기관

6.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란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정보보호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비용 발생 예상됨(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동 호